

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

공약출처		사업유형		사업주체				예산구분	
선거공보	[]	신규	계속	국가	도	군	민간/ 기타	예산 (백만원)	비예산
선거공약서	[V]			0	0	0	0		0
5대공약	[]								
완료시점			이행단계					추진율	
임기내	임기후	완료 종결	이행 후 계속추진	정상 추진	기타				
0				0			10%		
중앙정부 도움 필요성			해당없음 ■ / 도움필요(제도 □ 재정 □ 권한 □)						

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합계	기투자	2022	2023	2024	2025	2026	임기 후
계획액 계								
확보액 계								
집행액 계								
국	계획							
	확보							
	집행							
도	계획							
	확보							
	집행							
군	계획							
	확보							
	집행							
기 타	계획							
	확보							
	집행							

-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요구되는 지역의 지속적인 농업진흥지역 정비

□ 개 요

- 사업기간: 2022~ (기 추진 사업, 계속사업)
- 사업위치: 평창군 일원
- 주요내용: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
- 사업비: 비예산 사업

□ 추진상황

- 2010년 이후 14건 약 238ha 규모의 농업진흥지역 정비(해제·변경)
- 농림축산식품부 및 강원도의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시행하고 있음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○ 문제점

- 「농지법」 제2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음
 - * 농업진흥지역 지정·해제 시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「농지법」 제3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
 -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하는 경우
 - ② 도시지역에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
 - ③ 해당 지역의 여건(도로, 철도, 택지, 산업단지 등)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 3만㎡ 이하인 경우

○ 대책

- 농림축산식품부 및 강원도의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수립
-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결정 등에 따른 농지분야 협의 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적극 반영

□ 향후계획

- 특구실시계획 승인 신청(심평원 연수원)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 요청서 제출 : 2023. 8. 25.
 -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전용 및 진흥지역 해제 검토 진행중
- 농업진흥지역 정비관련 조사표 제출(여건변화 해제면적 11.4ha) : 2023. 11. 10.
 -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해제 검토 진행중(2024.2월 결과 통보예정)

추진부서 (팀)	허가과 (농지관리)	협조부서 (팀)		담당자 (연락처)	장준호 (☎ 330-2374)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